

별첨2-1 제수당 및 성과급 지급 기준

제수당 지급 기준

구 분	지급 기준	비 고
법정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1일 또는 1주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근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출납수당	금전 출납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감사수당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자격수당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컴퓨터 활용 등 기본 소양 관련 자격 제외
법정 선임수당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관리자로 선임된 자	자격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가족수당	①배우자 및 자녀 ②본인/배우자의 (남 60세/여 55세 이상)직계존속,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③본인/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④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배우자의 19세 미만 형제자매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 예산의 범위 내에서 4인 한도 (자녀의 경우 초과 시에도 지급) 세부지급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연구수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조사요원 중 매장문화재 조사, 보존, 보고서 작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자	
문화유산 ODA사업 특수지근무수당	가 지역 월 700달러 나 지역 월 420달러 다 지역 월 220달러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별표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기준 지역 구분. 2개월 이상 출장 명령 받은 근무지 근무일 기준 일할 지급

- ※ 수당은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함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감시단속적 근로자 중 교대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관계법령에 의거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합의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성과급 지급 기준

$$\text{성과급} = \text{기본연봉} / 3 \times \text{지급률(최대 100\%)} \times \text{근무월수} / 12$$

- ※ 성과급 지급은 전년도 12월 말까지의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지급일 기준으로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등급에 따라 지급률 결정
 ※ 성과급은 예산 범위 또는 재단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거나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지급률은 100%로 한함(참고 : 2018년도 성과급 지급률 = 58.4% (2019년 6월 지급))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기타 세부사항은 재단 보수규정 참조

별첨2-2 경력환산율표

경력환산율표

구 분	경력	환산율
갑 경력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경력 2.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및 특수법인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정규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4.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이 관리·감독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5.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대상 주식회사 등의 기업체 경력의 기업체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7. 한국문화재단의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 경력 8.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기술사, 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근무분야와 관련 된다고 경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의 기업체 근무경력	근속년수의 100%
을 경력	1. 상기 1호 내지 6호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직원으로서 정규직원 이외의 근무경력(계약직, 무기계약직 또는 1호의 경우 공무원 경력 등)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대상 이외의 주식회사 등의 기업체 경력 3. 프리랜서, 위촉직 등의 경력(연구분야 채용에 한하며 주40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4. 기타 채용유관업무 경력으로서, 이사장이 정한 경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	근속년수의 80%

- ※ 비 고
 1.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하고 그 미만은 생략함
 2. 동일 기간 내 중복되는 경력은 가장 유리한 경력 1개로 인정함
 3. 동등한 환산율을 적용받는 경력은 그 기간을 합산한 후 월 단위 이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4. 시간선택제 경력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5. 서류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함
 6. ‘갑 경력 4 및 5’의 비영리법인은 매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현황에 따름

전문가 등급 기준

구분	자격기준
가급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민간 상장·등록기업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자 ○기술사(건축사)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나급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4급 이상 공무원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민간 상장·등록기업 임원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되는 자 ○기술사(건축사)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급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5급 이상 공무원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민간 상장·등록기업 소속으로 해당분야 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직접적인 업무연관부서 근무경력기준) ○기술사(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 ○특급기술자
라급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7급 이상 공무원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공공기관의 4급 또는 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민간 상장·등록기업 소속으로 해당분야 업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직접적인 업무연관부서 근무경력기준) ○고급기술자
마급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바급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사급	○바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특급기술자는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경우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를 의미함)

※ 고급기술자는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상기 전문가 등급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등급은 별도 승인을 통해 정함

준조사원급 및 보조원급 자격 기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분	자격기준
준조사원	○ 매장문화재 전공을 한 사람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보조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보조원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비고

1. "문화재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의 고고(考古)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전통건축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재보존학과, 미술사학과, 민속학과, 박물관학과, 역사학과, 전통조경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문화재 관련학과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주제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해양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구물리학과, 해양학과, 지질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해양문화재 조사·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보존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과학과, 보존과학과, 예술관리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5. "발굴조사경력"이란 조사 요원으로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6.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이란 지표조사, 참관조사 및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이나 매장문화재 정리 작업 및 조사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7. 문화재청장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학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한 외국대학의 문화재 관련학과, 해양 관련학과 또는 보존 관련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조사 요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